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58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황명선 · 김동아 · 박지원
염태영 · 손명수 · 이학영
김재원 · 박균택 · 백선희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정책추진절차·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일관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전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증강·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립·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장군의 육성을 도모하며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전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증강해 나가기 위한 국방부장관, 합참·각군 및 관련기관, 방위사업청장 및 국방전력 관련 주체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체계 및 사업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방전력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 관련 주체가 제기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선행연구를 거친 후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국방전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국방전력사업 중 방위력개선사업은 방

위사업청장이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추진 함(안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구매 또는 연구개발한 국방전력체계 및 핵심기술 이 전력목표,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하고,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의 효과적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방전력의 발전에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 전력체계는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소속으로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 할 수 있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융복합지능화전 력체계 획득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 조).

차.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정책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업무수행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 여야 함(안 제15조).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증강·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립·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先進強軍)의 육성을 도모하며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전력정책”이란 국방전력(國防戰力)의 효율적인 발전 또는 증강을 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제반 정책을 말한다.
2. “국방전력체계”란 국방전력정책을 토대로 하여 국방전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거나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제반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가.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 나. “전력지원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

다.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적 성격의 전력체계로서 가목 또는 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전력사업”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발굴·기획·결정, 획득(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운영유지·폐기 등을 행하는 제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제2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나. “전력지원체계 획득사업”이라 함은 제2호나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다.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이란 제2호다목에 따른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의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국방전력 관련 주체”란 국방전력의 발전·증강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방전력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전력의 발전·증강 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국방전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2. 국방전력체계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연 없이 효율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총 수명주기에 걸쳐 상호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시행할 것
3. 국방부문·민간부문 및 국방전력 관련 주체 상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4. 국방전력의 증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
5. 국방전력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을 충분히 확보할 것

제4조(국방부장관 등의 책무) ① 국방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전력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방전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증강해 나가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방전력 관련 주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합참·각군 및 관련 기관은 국방전력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전력체계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전력지원체계 획득사업 또는 융복합지능화 전력체계 획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 및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전력 관련 주체 및 구성원은 수행하고 있는 국방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이 조화로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방전력의 발전·증강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전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방전력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6조(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하여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전력정책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전력체계 및 국방전력사업의 총수명주기적 통합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국방전력정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재원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국방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방 분야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하여 국방전력체계 및 사업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여 제8조에 따른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방전력정책위원회) ①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방전력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중기계획 수립의 추진 및 방향성에 관한 사항
4. 국방전력정책의 자원 배분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국방전력체계의 효율적 통합 관리

제9조(국방전력체계의 소요제기 및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 관련 주체가 제기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방위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방전력체계의 소요 제기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방전력사업의 추진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행연구를 거친 후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국방전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사변·해외파병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
가 있는 경우
2. 해당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선행연구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전력사업 중 방위력개선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 국방전력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방법 및 합리적 재원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조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국방전력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구매 또는 연구개발한 국방전력체계 및 핵심기술이 전력목표,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험평가의 기준·항목·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방전력체계의 운영유지 및 처분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하여 국방전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전력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유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 각 국방전력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되 국방전력 관련 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방전력체계의 운영유지 및 처분 등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대상체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2. 국방중기계획 반영
3. 소요의 검증 및 결정
4. 선행연구
5. 연구개발 및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6. 시험배치 및 전력화

②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대상체계의 소요 및 개발, 사업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소속으로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 추진 등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국방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추진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의 구분·결정 및 획득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의 획득 절차 간소화 및 유연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국방전력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정책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업무

수행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